

21대 대통령 선거
농업농촌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1. 정책 개요

-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과 먹거리,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농업·농촌·농민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5.16 군사쿠데타로 농촌의 실질적인 주민생활권인 읍면의 자치권도 박탈당한 채 65년간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농업은 비효율적인 산업으로 전락했고, 농촌은 피폐해졌으며, 국민의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방농정 결과로 한국 농업은 국제 글로벌 유통망에 종속되어 무분별한 시장 논리 속에서 파괴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 농식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빈부 격차는 먹거리에서도 극명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체 배출원의 28%에 달하며, 이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국지적 전쟁, 세계 식량 보호주의 확장은 국제 글로벌 유통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 한파, 가뭄,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이는 식량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농민들은 생계와 재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본과 기업 중심의 농정을 지속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농업과 먹거리, 지역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당하고 있다.
- 다중·복합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농업·농촌·먹거리·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정 추진체계 개혁과 국가 책임 농정 강화, 친환경농업으로의 전면적 전환과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확립, 농어촌주민의 생활 안전망 구축과 주민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 내란에 맞선 민주주의 회복력이 ‘국민과 헌법’이듯이 국가와 지역사회 유지 회복력은 ‘농업·농촌·먹거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책 방향

- 기후위기, 농업·먹거리위기, 지역소멸의 위기 등 다중·복합 위기에 대응하여 ‘농정 추진체계 개혁, 식량주권과 먹거리기본권 보장, 지역(농어촌)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 (1) [농정 추진체계]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개혁
- (2)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개혁
- (3) [식량주권] 식량자급기반 강화와 농민권리 보장을 통한 식량주권 확립
- (4) [먹거리기본권]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먹거리기본권 확립
- (5) [지역재생] 농어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및 생활 안전망 구축과 읍면 주민자치권 보장
- (6) [개헌의제]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창출·기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농촌 읍면 자치권 보장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 책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강구 명문화

3. 정책 과제

- (1) [농정 추진체계]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개혁
 - ① 국가기구 내 식량주권·지역·먹거리 담당 신설 및 행정 개혁
 - ② 대통령 직속 농특위 권한 및 기능 강화 등 농정 민주주의 실현
 - ③ 지자체 농어촌 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④ 농협의 정체성 확립,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농협개혁 추진
- (2)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개혁
 - 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면적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보장
 - ②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③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탈탄소 체제 실현
 - ④ 양분관리 기반 경축순환농업 사업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 축산 전환 지원

(3) [식량주권] 식량자급기반 강화와 농어민권리 보장을 통한 식량주권 확립

- ①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 ②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보전 대책 수립
- ③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 농정 실현
- ④ 청년농 육성 및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⑤ 국민 안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⑥ 식량자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4) [먹거리기본권]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먹거리기본권 확립

- ① 국민 누구나 건강·안심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 ②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과 교육

(5) [지역재생] 농어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및 생활 안전망 구축과 읍면 자치권 보장

- 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소득 체계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활동의 공공성 인정
- ② 농어촌 주민의 기초 사회서비스 획기적 확충
- ③ 읍·면 주민자치권 도입과 주민 참여 실질화, 행정 개혁

(6) [개헌의제]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창출·기여, 먹거리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 수단 강구 명문화

- ①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창출·기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 책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강구를 명문화함
- ②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 및 순환과 공생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 책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강구를 명문화함

4. 세부 정책 과제

1

국가기구 내 식량주권·지역·먹거리 담당 신설 및 행정 개혁

■ 배경 및 현황

-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가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식량주권과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지방소멸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국정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야 함
- 현행 농정 추진체계로는 식량주권·먹거리·농어촌 소멸 문제를 종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정책 과제

1) 식량주권·지역·먹거리 정책 담당 신설 및 구성

- 대통령실에 기존 농해수비서관실을 격상하여 식량주권·지역·먹거리 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배치
-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량주권·지역·먹거리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관 신설, 국정 조정 기능 강화
- 국회의장 직속으로 ‘식량주권·지역·먹거리특별위원회’ 설치하여 초당적 논의와 입법 지원
- 수석비서관, 정책관, 특별위원회 협력체계 구축

2)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행정개혁 및 예산편성권 조정

- 주요 정책과제 수행과 부처(부서)간 협업을 촉진하도록 농식품부 조직 및 예산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 부처(부서)간 협업을 촉진하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성과 관리시스템 강화,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등
- 농업 분야 대국민 사업(귀농·귀촌, 도시농업, 생협 등) 총괄하는 “국” 신설 및 개편
- 예산편성의 기재부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담당 부처 및 국회의 역할 확대
: 부처(농식품부 등)와 국회 간 예산 협의 기구 도입 및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

■ 배경 및 현황

- 2019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 농특위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 기구로서의 한계가 분명함
- 현행 농정 추진체계는 민관협치 수준이 낮아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정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렴하여 부처와 협의, 농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진정한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 위상 확립 필요
- 농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정책 과제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민관협치 기능 강화

- 현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민관협치, 농정 거버넌스가 가능하도록 법·시행령·운영 세칙 개정
- 본위원 구성, 분과위원회 및 정책(안) 협의 체계, 정책 관련 의견 수렴 체계, 의사결정 체계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 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되도록 함

2) 농특위 목적 실현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및 역할 강화

- 농특위·대통령실·농식품부(해수부)의 상설 협의 체계 구축
- 단순 자문기구에서 정책집행이 가능한 의결 권한을 가진 기구로 위상 강화
- 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하는 농촌살리기 종합 전략 수립 및 추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원회) 통합 추진 등

3)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과 시범사업 재개 및 확대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범농어업계 대표 대의기구 설립·운영 근거 마련
-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확대로 농정 민주주의, 협치농정 실현의 기반 구축
: 2010년부터 45개소(광역 2, 시·군 43) 선정. 2025년 현재 27개소(광역1, 시·군 26)는 설립·운영 중
- 2023년 시범사업 종료, 시범사업 재개 및 확대로 전국적 확산 촉진 필요함

■ 배경 및 현황

- 지방자치분권과 민관협치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198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1995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역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 특히,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적 침체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민관협치형 정책 추진이 절실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관협치 모델을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읍면 단위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정책 과제

1)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지자체별로 농어촌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활성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부서간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 정례화와 기본조례 반영
-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 및 관련 기구 활성화

2)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민간위탁 제도 활성화

- 농어촌 지역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강화하도록 중앙정부 협의 강화
- 농어촌정책의 민간주도성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과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수탁법인 설립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읍면 단위 포함)

3) 보조금 개혁과 협정(협약)을 통한 사무위탁 활성화

- 보조금사업과 위탁금 사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민간의 공공성 활동에 대해서는 주민 협정 혹은 협약을 통해 사무위탁으로 처리

4) 지방정부의 농정 역할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농정 지원

- 농정 관련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을 재정비 혁신하고, 중앙 농정사무의 지자체 위임 시 비용·인력 등 재원을 중앙이 부담하는 법정 수탁 사무화를 추진함
- 농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재정력이 강한 도시 지자체가 재원을 적절히 분담하는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함
- 국가보조금을 일반보조금화하고, 포괄보조금 교부시 중앙·지방 간 건전·효율 재정운용을 위한 농정협약제도로 책임있는 자치농정권 보장을 추진함

4

농협의 정체성 확립,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농협개혁

■ 배경 및 현황

- 농협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농촌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도록 조직 탈바꿈 필요
 - *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 사업구조를 경제사업(농산물유통구조*) 중심으로 재편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과의 경쟁 관계 해소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 제고 필요함
 - * 산지 조직화, 농협공판장 기능 강화, 농산물 물류체계 참여 등 소비자 시장에서 능동적 역할 제고 필요
- 도시와 농촌 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 되고 있으며, 도시농협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와 특혜를 통해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경제사업에서 한 역할이 미흡함.
-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 필요

■ 정책 과제

1) 도시농협의 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도시농협에서 농촌지역 농협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예: 수신고 1조원 이상 도시농협은 연간 100억원 이상 농산물 구매 의무화, 기존 논의한 것처럼 신용매출 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

2)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율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 농협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회원조합 지원과 경제사업에 투자하도록 법률 개정 필요 (현행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1000분의 25)
 - * 농협법에 따라 농업·농촌·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 등 계열사에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비용

3)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현재 12선 조합장 존재) 제도로 인해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조합의 사기업화, 특정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3선 연임 제한

5

친환경농업으로의 전면적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보장

■ 배경 및 현황

- 세계 각국은 농업 부문의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를 통한 생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EU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통해 2030년 전체 경작지의 25% 유기농으로 전환, 프랑스는 2027년 전체 농지의 18% 유기농 확대, 덴마크는 2030년 전체 농지의 21% 확대 등
- 우리나라는 스마트농업·디지털농업 등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친환경농업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최근 5년간 친환경면적의 연평균 감소율은 4.0%로 전체 농지 면적 감소율 1.1%의 네 배에 달하고 있음)

■ 정책 과제

1) 국가 차원의 친환경농업 전면 전환 선언

-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 30% 달성, 화학비료·농약 50% 감축, 논농업 100% 친환경 재배 전환 등 친환경농업 전면 전환 추진 계획 마련
- 친환경농업 전면 전환 추진상황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례 보고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 '(가칭)민관 친환경 생태농업 공동 추진위원회' 법제화하여 민관 거버넌스 실행 체계 구축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 농식품부, 농진청, 농경연 등 각종 기관의 관행농업 위주의 체계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체계로 개편

2)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① 친환경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대 및 제도 개선

-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폭 확대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가 적정 소득을 보장,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 직접지불금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확대하기 위한 예산 기반 마련
-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 지속직불금 확대, 무농약 지속직불금 및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직불금 신설(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농업환경보전 직불)을 전면 확대개편하고 직불금 제도와 연계하여 마을과 읍면 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

②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확대와 읍면 단위 먹거리복지 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원료 구입, 가공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 * 지역농산물 농민가공 법률 제정 :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서비스 종합지원체계 구축, 기업적 가공과 차별화된 농민가공(협동체, 농민) 제도 도입
- 임산부꾸러미,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 등 친환경 예산 복원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장(생협·로컬푸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지원하고 직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유통망 조성
- 읍면 단위로 소규모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먹거리복지 강화

③ 친환경농지 보호 제도 마련

- 친환경농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 마련(탄소흡수원법 개정)
-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 및 장기 임대하거나 친환경농업 용도로 이용하게 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농지법 등 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업인이 집적된 지역을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 및 육성 (농촌 공간재구조화법 개정)

④ 생태환경보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농산물(농식품)인증제도 개편

- 친환경인증(유기농·무농약), GAP, 저탄소인증 등 분산된 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 부담 완화(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법 개정)
-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존 기여도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인증제 (Participatory Gurantee System)의 도입 및 단계적으로 확산 추진(친환경농어업법 개정)
- 자연재해, 기후변화, 긴급상황(돌발병해충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예외적인 생산 규정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회복력을 제고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기후위기 심화(폭염, 집중호우 등)로 농작물 재배·가축 사육환경이 악화(재배적지 이동, 농업재해 빈발, 병충해 증가 등)되어 생산이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는 경영이 불안정하고 국민에게는 먹거리 수급 불확실성 문제가 심화됨
- 현행 재해 대응 제도(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지원은 재난 후 농민의 영농 재개와 재생산에 턱없이 부족하고, 다수의 중소농(특히 고령농·여성농·영세농)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정책 과제

1)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 예방 대책 확충 및 사각지대 없는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복구지원 실거래가 보상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등 기후재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함
- 실효성 있는 재해보상과 정책 추진을 위한 농업 소득정보 파악 및 소득신고 방안 마련
-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한 재해보상 체계 마련 (농산물재해보험 내 친환경농업 맞춤형 보험 설계)

2) 양곡관리법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 법 제정

-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 불안정성 증대 및 생산비 상승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보장하고,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함

3) 농어업기후적응기금 설치

- 농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비용 지원, 농어민의 기후재해 대응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개인 부담 전액 지원 등 농어업 기후 적응을 위한 통합적 재원대책을 마련함

■ 배경 및 현황

- 농업·농촌의 에너지 소비는 축산과 시설작물 확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 구성에 있어서도 전력 소비가 석유류 소비를 대체하면서 전력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2018~20년 농림업 에너지 소비량 연평균 4.5% 증가(에너지총조사), 농림업 전력소비 비중 62.8% (2020년)
- 전력망 부족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전력망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함.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에너지 인프라가 열악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난방비 부담 증가 및 에너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이에 따라 농촌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시설원예·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과제

1) 전력망 구축으로 (농촌)재생에너지 발전 기반 구축

- '24년 9월부터 전력망 준공(계통 보강) 이후인 '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중단 문제(전남북, 강원, 제주 등) 조기 해결을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

2)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농업 생산·가공·유통 시설의 건물 옥상·유류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RE100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부문의 에너지 자립 추진
- 식량안보를 고려한 우량농지 보전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 참여 기반·마을 공유 자산 활용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설치로 소득형(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농어촌 생활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어촌 난방 문제 해결

3)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지원

- 축종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세분화,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대,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정밀사양기술 보급 확대, 저탄소 축산직불제 확대 등
- 경축순환과 축산바이오가스, 마을태양광, 산림바이오매스 등을 연계하여 읍면 단위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도입

■ 배경 및 현황

-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최근 사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장내 발효와 가축분뇨 처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필요함.
- 지역 내 가축분뇨 통계(발생량, 처리량, 처리 잔재량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통해 탄소중립형 농업구조로 전환하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전염병,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비윤리적 사육과 도살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업으로 전환 지원이 필요

■ 정책 과제

1) 경종과 축산, 지역과 환경이 공존하는 탄소중립형 경축순환 시범지구 조성 및 확대

- 지역 내 양분(축산분뇨 등)을 자원화하여 농지에 공급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작물을 사료화하여 가축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축순환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 축산·경종 농가(단체), 자원화 조직, 지자체의 거버넌스로 지역 토양양분 관리 계획 수립 및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농촌특화지구 제도와 연계하여 읍면 단위 경축순환 시스템 구축

2) 동물복지 축산 전환 지원

- 남용되는 예방적 살처분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작물제 확대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3) 양분관리 기반 적정사육규모 관리제 및 경축순환작물제 도입

- 현행 축산법 체계를 축산법과 축종별 개별법(제정) 체계로 전환, 각 축종별 적정 사육 규모 관리제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경축순환작물제 도입
- 환경과 조화로운 적정 사육규모 계획 수립 및 관리 방안 마련과 기후·식량 위기 대응으로 사료자급률 확대 및 자원 순환형(양분관리) 축산업으로 전환

9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 배경 및 현황

- 수입개방과 시장지상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기후·농업·먹거리·지역 위기의 시대에 농민배제·농업해체와 농촌소멸 및 국가의 지속불가능 위기를 가속화하는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민·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보호·육성할 수 있는 새 농정철학을 수립, 그에 걸맞은 새 기본법으로서 농민·농업·농촌 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으로 대체 제정해야 함
- 특히 농민권리 보장으로서, 농민의 정의 재정립, 식량주권, 종자권, 안전하게 농사 지을 권리, 물에 대한 권리, 가공·유통·수출·판매 권리 보장 등을 명문화해야 함
- 아울러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명문화하여, 농정의 기본원칙 명문화, 국가 식량자급대책 수립 추진, 농민·농촌주민 수당 지급(국가지자체) 및 소득향상·생활안정에 필요한 행·재정 조치 시행, 공익직불제의 양적·질적 확대·강화, 농정예산을 정부예산 대비 5% 이상 확보 등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정책 과제

1) 농민·농업·농촌 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 현행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 농민·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농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농민·농업·농촌 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으로 대체 제정함

2) UN농민권리선언 제도화 : 국가의 책임과 생산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3) 농정의 기본원칙 재정립

- 국가책임의 식량자급률(60%) 상향과 이의 실현을 위한 식량주권 필요농지 보존관리 시행, 3대 곡물(쌀·밀·콩)+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와 계약재배 및 책임 구매(적정생산비 보장) 등 국가책임농정 실현, 농민의 가격 결정권 및 공정가격 보장 등을 통해 농민의 권리와 적정 소득을 보장함

4) 농민의 권리와 식량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공공비축미 100만톤 매입제도 실시, 수입쌀 전량 해외 원조를 시행하며,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물량)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등 농민의 권리와 식량 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함

5)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공공농업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 배경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아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농지는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공공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하고 농지 전용이 가속화되고 있음.
- 현재 농지법과 관련 제도가 있지만 비농민의 농지 소유, 농업진흥지역의 전용 등으로 인해 농지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 정책 과제

1) 농지법 개정

- 농지농용(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비농민의 농업진흥지역 소유 금지 와 농업진흥지역의 전용 금지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 농지법 제34조, 공공건설사업 시 농지전용 승인 절차 강화 (사전 협의 → 사전 승인으로 변경)

2) 농지조사특별법 제정

- 농지실태 전수조사의 제도적 근거로 전국적인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마을 및 읍면별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실질적 관리 강화

3)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 부당수령 행위 방지와 장기 임대 계약 보장과 음성화된 농지 임대차 관행의 양성화, 농지 임대 자격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농지 임대 확산 방지

4) 농지 보전 강화 조치

- 식량자급률 목표 수립 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 농지 면적을 확보하는 농지 총량제 제도화, 산업단지 및 공공건설사업 시행 시 농지가 포함될 경우 최소 과반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 (국토계획법 개정)

11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 농정 실현

■ 배경 및 현황

- 여성농민은 농가인구 중 50.9%(2023년 기준)를 차지하고 전체 농업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농촌공동체 유지 및 식량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여성농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지위는 변화가 없음.
- 여성농민의 법적·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적 개선은 요원하고 여성농민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만든 농식품부 전담부서(팀)는 한시적 운영 이후 존속이 불투명함

■ 정책 과제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개정하여 여성농민 관련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등 여성농민 관련 추진체계 구축 운영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구분 없이 농업종사자로 등록하도록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함

3)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및 성평등 농정 실현

-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 실현, 경영주·공동경영주·농업종사자 구분 없이 농민 개별 등록 보장, 중앙·지방 정부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 의무화, 여성농민의 돌봄노동 사회화, 건강 보장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정 및 제도를 강화함

■ 배경 및 현황

- 우리나라의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69세에 이르고, '23년 농가 호수 100만이 무너진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 농가 비중은 0.5%(5,439가구)에 불과함
- 청년농 3만명 육성 공약이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청년농 육성 자금(정책대출) 대상자 선발은 대폭 늘리고 예산은 수립하지 않는 등 국가의 '농업판 전세사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 되어 왔던 청년 농업인 정책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질적인 성장과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정책 과제

1) 맞춤형 지원 및 육성 정책(사업) 수립

- 청년 농업인이 처한 다양한 조건(1차 산업 및 2·3차산업 기반)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육성 정책 수립

2)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후속 연계 지원 정책 마련

- 청년 창업농들이 3년 안에 정착 및 자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 추진 필요 (지원 기준과 내용을 담은 지침 필요)

3)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농가 세대로 구분

- 기존의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구분된 출산·육아 지원을 남녀 구분 없이 청년 농가 세대로 확대하여 농촌에 양성평등 문화 정착

4) 청년 농업인 지원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여러 기관과 사이트에 분산된 청년 농업인 지원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5) 청년창업농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 기준 확립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청년창업농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명확한 모니터링 기준 확립 및 강화

6) 청년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지원, 농지은행 제도 개선(비축농지 공급확대 및 임대조건 개선)

■ 배경 및 현황

- 최근 국내외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식품 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와 인접국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신뢰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산물 이력제는 도입 이후 제도의 인식 부족과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어업 구조 측면에서는 연안어업과 균해어업 간의 갈등, 기후 변화로 인한 조업 환경의 불안정, 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어업 형태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은 해양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임.

■ 정책 과제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 및 신뢰할 만한 검증 추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증 추진

2) 수산물 이력제 개선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로 2008년 도입. 2023년 기준 수산물 이력제 표시 관련 물량은 32만7574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0.25%의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개선 필요.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강화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히 높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 필요.

4) 연·근해 어업을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분리, 차별화된 제도화 추진

- 안전 조업환경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분리하여 각각의 어업 구조를 고려한 제도화 필요함. (근해어업인 2,700여명 6%, 연안어업인 50,000여명 94%) 선박 엔진 개방검사 제도 개선, 표준어선 기준 완화, 기상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 종합 대책 수립 등

5) 연안어선(소형어선) 감척사업의 지원 확대

-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감척사업 지원이 근해어선(쌍끌이 대형저인망, 대형트롤,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등)을 중심으로 집중 추진하고 있음. 연안 소형선박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어촌 지역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6) 수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의 직선제 도입

- 현행 간선제 방식의 수협중앙회장 선출은 대표성 및 민주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직선제 도입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개선

■ 배경 및 현황

- 현재 도시농업은 옥상텃밭, 학교텃밭, 공동체 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 중 (2022년 텃밭 수는 18만5천 개소, 면적은 1,052만m², 참여자 수는 196만여 명), 도시농업이 갖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의 총액이 약 5조2367억원에 이르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도시농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식량 생산이 가능한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세계의 도시농업은 단순한 개인적 여가 활동을 넘어 농업과의 통합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도시농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경제적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정책 과제

1) 도농상생의 파트너로서 도시농부로서 역할 증대

- 농촌은 생산, 도시는 소비라는 시장주의 틀을 넘어, 도시농부를 예비농업인이라 농업·농촌을 살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 강화
- 예비농업인으로서 도시농업의 역할 명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 도농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지원 및 CSA(공동체 지원 농업) 활성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 식량위기에 대비한 자급 농부로서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 식량 공급 및 자급생산 기지로 도시농업 활성화(자연녹지 공간을 생산 기지로 보존)
-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 도시농업 적극 유치 및 도시 내 농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 도시 내 유휴지(아파트단지 내 녹지, 옥상, 자투리 공간 등) 도시농업 활용 합법화
 - :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 공간 활용 시 공원 관련 제한 완화.
- 도시농업 활용 시 도시 농지의 임차 제한 완화 (농지법 일부 개정 필요).
 - : 식량위기에 대비한 농지 보존책으로 농지총량제 도입 시 도시 농지도 포함
- 미래 농업을 위한 학교텃밭 활성화
 - : 학교텃밭 지원법 제정 및 조례 제정과 학교텃밭 강사 합법화 (방과 후 교사)

3)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농업으로서 도시농업 지원

- 낭은 음식물 퇴비화 등 자원순환 도시농업 지원
- 토종종자 도시농업에 적극 분양 (국립종자원 지역별 원종장에 토종종자분양센터 설립)
-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사회적농업 연계·협력 강화

■ 배경 및 현황

- 우리나라는 먹거리와 관련한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과 통합적 국가전략이 부재함. 특히 11개 부처에 걸쳐 57개 법률이 난립 중인데, 정책·예산의 통합성과 연계성이 부족해 이를 정비하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국가적 수립·추진을 통해 기후위기, 농업·먹거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관련 정책·예산에 관한 먹거리종합전략 수립·시행을 의무화해야 함
- 특히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먹거리자급력 강화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장하며, 학교·공공급식의 국산먹거리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며, 로컬푸드·유기농 확대 공급, 중소농·사회적경제의 가공·유통 공급자 확대, 범국민적 식생활교육 활성화와 먹거리시민 양성, 먹거리정책 전담추진체계 구축 및 국민의 정책 참여 상설 숙의기구 운영 등, 지속가능하고 공적인 먹거리수급계획(food plan) 수립·시행을 의무화해야 함. 이에 기후위기시대에 농업과 먹거리 위기가 가속화되는 오늘,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함.

■ 정책 과제

1) 먹거리기본법 제정

- 국가(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의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전담 직제(먹거리정책책임관)를 신설하여 부처별·시도별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정부 특임장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먹거리정책 국민참여 상설 숙의기구 운영 등을 추진함
- 먹거리기본법에는, 특히 기후위기와 농업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상향의 구체적 목표 명시,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지규모 확보 계획 수립·추진 의무화,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의무와 역할 강화, 농촌 읍면 단위의 먹거리 주체 육성 및 먹거리복지 실현 등을 명시함

2) 국가·지자체 먹거리종합전략 수립·시행 의무화

- 기후위기, 농업·먹거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먹거리 관련 정책·예산의 지속가능한 통합적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시행 의무화 지구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기후급식·기후식단 중심과 채식 선택권 보장의 공적 먹거리 수급 계획 의무 수립·시행 등을 추진함

16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과 교육

■ 배경 및 현황

-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식단과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단체급식(학교, 복지시설 등) 외의 시민 식사에 대해서는 식생활 지침의 발간 외에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부재함
- 특히 청년·노인 1인가구 등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먹거리 돌봄 정책과 세분화 된 교육이 절실함

■ 정책 과제

1) 공적 영역(학교·군대·공공기관 등)의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 및 식재료 기준 마련

- 학교급식법·사회복지급식법·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 군대급식 기본법 제정 및 공공급식에서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학교·공공급식 및 농식품바우처, 임산부꾸러미, 초등돌봄과 일간식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식재료에는 5무(농약, GMO, 방사성 물질, 식품첨가물, 항생제 없는) 원칙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 및 적용

2) 급식업무 국가 공공성 강화

- 국가사무화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사무화, 중앙정부에서 소요재원 50% 지원과 기초·광역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급식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종사자 건강권 보장 등을 추진함

3)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

- 유초중고 식생활교육 및 자연·농촌체험 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하고, 청장노년 생애주기별로 식생활교육 체계를 구축함
- 지자체의 읍면동 단위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담장을 넘어 식생활교육과 자연·농촌체험, 로컬푸드, 먹거리돌봄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4) 식품위생법 등 개정

- 식물성 기반 식단 메뉴 개발 및 급식 제공을 위한 전문 영양사 및 조리사 양성과 자격과정 개설을 추진함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농가와 마을, 읍면 단위의 소규모 가공산업을 육성함

5) 먹거리 돌봄 정책 전면화

- 농식품바우처사업을 전국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돌봄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등
먹거리 돌봄 공적조달체계를 구축 지원함

6) 기후먹거리, 채식선택권 보장

- 급식 채식선택권을 도입하고, 국내산·친환경·제철 농산물 관련 국가의 가치중심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함

7) 친환경 농산물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임산부꾸러미사업을 전국화하고 초등돌봄과일간
식 사업을 전국화함

8) 공공먹거리 건강 식품에 가이드라인

- 공공급식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담당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공함

9) GMO완전표시제(원료기반) 도입과 방사성 물질 검사 제도화

- 식품위생법 고시 개정을 통한 GMO완전표시제(원료기반) 제도화, 학교·공공급식 등에서
방사성물질검사 제도화

■ 배경 및 현황

- 지역소멸 위기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위기이고 그 주요 원인은 농어촌 인구 감소임. 이 제 농어촌 살리기는 농어촌 주민과 해당 지자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음.
- 범부처의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조정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 또는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과 농촌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며, 이러한 국가적 대응을 통해 농어촌경제가 살아나야 지역사회가 회복됨.
- 현재의 농어민 수당과 직불금 제도는 모두 ‘개인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운 마을기금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 방식의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짐. 나아가 준비된 마을(신청서 작성과 집행, 정산 등)은 공모사업을 신청하지만, 그렇지 못한 마을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정책 과제

1)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국토·환경·지역·문화를 지키는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농어민) 기본소득 또는 농어촌 주민수당 등 시행이 가능한 기본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소멸고위험지역 시·군의 면 지역부터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 도입 후 단계적 확대)
- 각 부처 지역개발 예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폭 조정 및 국비·지방비 매칭 통한 재원 조달
- 농어촌(농어민) 기본소득 또는 농어촌주민수당 등의 절반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 농어촌을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 혁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선도
- 지원액 일부를 마을공동체기금(행정리, 법정리, 읍면 단위)으로 조성하여 마을자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유지관리 재원으로 운영 지원(공동시설 및 경관환경보전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등)

2) 농어촌기본소득법(주민수당법) 제정

- 농어촌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지역공동체 유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관련 법률(농어촌기본소득법 또는 농어촌주민수당법) 제정

3)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 지원

- 농촌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함. 행정리 마을 단위와 읍면 단위를 동시에 고려함. 예) 마을공동체농업 활성화, 농어민수당 및 공익직불금의 일정 비율(5~10%)을 마을공동체에 의무 기부, 주민 주도의 마을태양광 발전,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제도 반영, 행정이 매년 소액 예산(300~500만원)을 읍면 단위 모든행정리 마을로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및 단계적 확대 등

■ 배경 및 현황

- 병의원·약국 이용 편의성, 의료 서비스 범위·수준, 응급의료서비스 신속함, 생활 서비스, 식재료 구매, 외식, 난방 인프라 등 주요 항목에서 도·농간 기초적 생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인구 2천 명 이하의 과소 읍·면은 2020년 354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소 지역일수록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 마을의 평균 사회조직(마을회, 부녀회, 새마을회 등) 수가 줄어들면서 마을공동체 기능이 약화 되고 있음
- 농어촌주민들에게 돌봄·의료·교육·주거·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돼야 함. 현재 국가가 정한 최소 서비스 항목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관련해 국내 군 지역의 달성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정책 과제

1) 지역균형발전법 개정

-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

2) 읍·면 단위 기본생활 사회서비스 보장

- 마을주치의 제도와 마을순회진료체계 구축, 1면 1초·중학교 ‘절대학교’ 유지·육성, 읍·면 저상 전기버스 무상·공영제 도입 및 운행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농촌지역 전면 확장 구축 등을 추진함(기존 관련 법률과 연계,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도성 보장)

3) 농촌살리기와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체식당 운영 지원, 시외 및 마을버스 운행 확대, 대중교통 수단 확충, 문화생활시설 확충 등을 추진함

4)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공·사회적경제조직 등) 보급

- 농촌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을 확대 보급하여 농촌주민 주거복지를 총족하고, 귀농·귀촌인의 주거수요를 해결함

5) 농촌형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집중 육성·지원

- 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의 주민주도 비영리 법인의 설립 운영을 지원함
-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함

■ 배경 및 현황

- 농어촌주민 스스로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함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단된 읍·면·동 자치를 부활시키고, 마을자치를 활성화 시켜야 함
- 읍·면·동 주민자치를 읍면부터 전면 도입하여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하고, 읍·면·동 주민회의와 경제협동·생활협동 등 주민의 자치·협동 조직을 지원·육성하여 협동과 연대의 농촌 자치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함

■ 정책 과제

- 1)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권한·재원 지원 근거 마련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근거, 시범사업으로 일부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전국 설치와 운영 지원을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읍·면·동 주민자치제 실시의 제도적 근거 및 주민자치회의 권한 보장 및 운영에 관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
 -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위상·권한·기능을 특히 읍·면 자치권과 관련하여 재설계하고, 농촌의 과소지역 면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하며, 주민자치회의 권한·기능 재설계를 통해 농촌재생 읍·면 거버넌스를 구축함
 - 현행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거나, 새로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주민주권 시대로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함
-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폐지
 -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산업폐기물 매립, 유해시설 조성 등으로 농어촌주민의 삶이 파괴되고 생태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 의사결정에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함
 - 특히 <이명박정부+민간업체+지자체>의 묻지마식 농어촌 파괴 개발주의 산물인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폐지하고 폐기물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함
 - 유해산업시설 철폐와 송전탑 지중화 및 케이블카·골프장 등 국토·환경 훼손 위락시설을 방지함

3)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농지전용 규제 및 계획 수립시 읍·면 단위 계획에 기반한 상향식 수립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특화지구 제도가 농지 전용 또는 산업단지화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 필요
- 농촌공간재구조화계획은 읍·면 단위 계획을 기반으로 상향식으로 수립

4) 농어촌 자치공동체 지원

- 읍·면·동 주민회의와 경제협동·생활협동 등 협동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자치·협동 조직을 지원·육성함
 : 특히 마을(행정리, 법정리)과 지역사회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법제화(읍·면 자치권 보장과 관련)

5) 고향사랑기부금을 읍·면별 지정기부제로 추진

- 고향사랑기부금을 과제별 지정기부제가 아니라 읍·면별 지정기부제로 하여 읍·면발전 기금 조성, 읍·면 주민자치회에 사용처 심의권 부여 등 추진

6) 읍면사무소 행정의 전면적인 개혁

- 시군 지자체의 출장소에 불과하고 정책적 권한이 없는 읍면 행정의 전면적인 개혁 검토. 읍면장 전문직위제 지정 및 주민추천제 확대, 읍면 행정의 예산권과 인사권 확대, 주무 팀의 기획 및 총괄조정 가능 강화,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관리위탁 및 사무 위탁 제도 활성화 등

20 개헌 의제

-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창출·기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 책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강구를 명문화함
-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 및 순환과 공생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 책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강구를 명문화함

